

재정통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

재정통계 개편안

2011. 1. 26

민관합동작업반

개 요

□ 주 제 재정통계 개편안

□ 일 시 2011. 1. 26(수) 15:00~18: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5:00~15:10 개회사

▶ 개회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5:10~17:5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 발표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재정통계 개편안」

▶ 토론자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명기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계위원장(홍익대 교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심상복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중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계국장
정남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홍동호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순)

17:50~18: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8:00 폐회

목 차

| | |
|---------------------------------|----|
| I. 재정통계 개편의 배경 | 1 |
| 1. 개편 배경 | 1 |
| 2. 추진 경과 | 3 |
| 3. 기대 효과 | 4 |
| II. 재정통계 현황 및 문제점 | 5 |
| 1. 재정통계의 국제기준 | 5 |
| 2. 우리나라 재정통계 현황 및 문제점 | 8 |
| III. 재정통계 개편방안 | 12 |
| 1. 기본 방향 | 12 |
| 2. 일반정부 포괄범위 (중앙정부, 지방정부) | 13 |
| 3. 공적연금 총당부채의 처리 | 30 |
| 4. 내부거래의 제외 문제 | 33 |
| IV. 향후 추진일정 | 36 |

I. 재정통계 개편의 배경

1. 개편 배경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선진화 필요성 증대

- 성장잠재력 확충 등 미래대비 투자는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가 급증할 전망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재정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

⇒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향후 재정위험 예측 및 분석능력 제고 필요

□ 발생주의 회계 등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 산출 필요

- 세계 주요국은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산출 중
 - OECD 30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발생주의 도입 (2009년 3월 현재)
- 우리나라는 2009 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기준을 적용한 정부 결산보고서를 시범 작성 중이며,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종전에는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정부결산을 실시
 - (국가재정법 부칙 제9278호 제1-2조) 발생주의·복식부기 결산보고서 작성은 2009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고, 국회·감사원 제출은 2011 회계연도부터 시행토록 명시

⇒ 정부결산 회계기준의 변경에 맞추어 국가채무·재정수지 등 재정통계 산출 방식을 개편할 필요

□ 그 간 지속된 국가채무 규모 등에 대한 소모적 논쟁 종식 기대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통계는 IMF의 1986 GFS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어 재정정책 수립과정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각종 재정통계의 국제비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특히 국가채무 통계의 경우 정부 포괄범위와 부채항목이 국제기준에 비해 협소하여 과소추계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장 많이 받아 왔음
 -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에서 보증채무, 통안증권 등 한국은행 채무, 연금의 잠재채무,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채무, 지방공기업 채무,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채 등을 포괄하여 국가채무가 정부발표치(100조원 내외)보다 훨씬 큰 400조원에서 1,0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음
 - 이후 국가채무 축소외혹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직접채무 외에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공기업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2009년말 1,637조원(정부발표는 359.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정부범위 협소 등에 대해서도 과소추계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2006년 기획재정부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재정범위 설정에 대해 공기업은 국제기준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다든가, 나머지 공공기관도 시장성 기준을 적용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음
- ⇒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나라 재정통계를 가장 최신 국제기준 및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개편할 필요

2. 추진 경과

□ 2008년 11월부터 재정통계 개편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운영

-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팀장)·재정정책국장·공공정책국장·국고국장,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은행, 조세연구원, KDI, 대학교수 등
- 총 15차례 재정통계 TF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산출기준, 정부 포괄범위 설정방안 등을 검토

□ 작업에 필요한 해외조사, 연구 및 국제회의 등 추진

-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파악
 - 한국조세연구원, 2009. 7~12월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7개국과 IMF, OECD, EU 출장조사 실시
- 원가보상을 산출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10. 7~12월
- OECD 회의 등 추진
 - OECD Expert Meeting (2009.10.5) “Defining the Government Reporting Entity for Official Gross and Net Debt”, OECD Conference Centre, Paris
 - 재외공관 등을 통한 해외사례 파악

3. 기대 효과

□ 재정통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그 간 제외되어 온 발생주의 부채항목, 비영리공공기관 추가 등을 통해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한국은행 통계와의 불일치 해소, 최신 국제기준 적용 등을 통해 재정통계 신뢰성 논란을 불식시킴

□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 최신 국제기준 적용에 따른 객관적 국제비교 및 재정상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
- 재정당국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함
- 또한 새로운 재정통계 체제가 국가의 정책입안에 있어 필수적인 기초 제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도 있음

II. 재정통계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통계의 국제기준

□ 일반적으로 주요국은 IMF의 1986 또는 2001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기준에 따라 통합재정통계를 산출

(1) 1986 GFS

- (회계기준) 현금주의에 따라 채무는 상환시기와 금액이 정해진 **확정 채무(Debt)**, 수지는 **현금의 수입-지출**을 각각 작성
 - 현금주의: 발생주의에 의한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BTL 등 제외
 - 확정채무: 보증채무, 연금 충당부채, BTL·BTO 등 제외
- (정부 포괄범위)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을 대상
 - 다만,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미제시

(2) 2001 GFS (UN의 1993 SNA 및 EU의 1995 ESA)

- 2001 GFS는 UN의 19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상의 개념·기준 등에 따라 1986 GFS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1993 SNA와 동일
 - 가장 최근의 국민계정통계 작성매뉴얼은 2008 SNA
 - 유럽연합(EU)은 SNA지침을 회원국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1995 ESA(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를 제정

- (회계기준) 1986 GFS상 Debt 이외에 **발생주의**에 따라 경제적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등도 포함하는 **확정부채 (Liability)** 및 감가상각비 등 재정수지 항목도 포함
- (정부 포괄범위) 정부기능 수행기관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제도단위, 시장성기준 등)을 제시
 - (i) 독립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단위**로서, **시장성기준**을 통과시 공기업, 미통과시 일반정부로 분류
 - 제도단위: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인 자금운용계정 보유 여부로 제도단위 여부 판단(형태: 정부, 기업, 준기업, 비영리기관)
 - 시장성기준: 시장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으로 시장산출물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판단
 - 시장성기준의 보다 구체적 예로 EU의 1995 ESA와 UN의 2008 SNA에서 제시된 원가대비 매출액 비용(**원가보상률**)의 50% 초과 여부 기준 등이 있음
 - (ii) 정부 내에서 기업활동을 수행시 '**준기업(Quasi-Corporation)**'으로 규정하고, 정부범위에서 '**준기업**'은 제외
 - 예시: 지식경제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는 사업 및 조직의 독립성 등을 고려, 정부에서 분리가 가능한 별도 제도단위인 '**준기업**'으로 인식
 - (iii) 시장성테스트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추가적인 기관유형**을 제시
 - 구조조정기구 : 2008 SNA 22.47~50 (예: 구조조정기금, 예보채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 정부가 유일한 고객 : 2008 SNA 22.33 (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 **사회보장기구** : 2001 GFS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제도 단위인 경우 시장성기준과 무관하게 일반정부부문의 하위부문에 속하지만,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부기 (예: 국민연금 등)
- **직역연금** : 2001 GFS에 따르면 연금재정의 운용방식과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

<표 1> 2001 GFS의 연기금 분류기준

| 연기금 유형 | | 포함 부문·단위 | 우리나라의 예 |
|--------|------------|--------------------|-----------------------------|
| 직역연금 | 적립식 | 자율형 | 금융공기업 |
| | | 비자율형 ¹⁾ | 일반정부 |
| | 비적립식 (부과식) | 일반정부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²⁾ |

1)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

2) 당초 적립식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사실상 부과방식으로 운영

2. 우리나라 재정통계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재정통계는 정부(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통합재정통계와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일반정부통계(국민계정통계의 일부)가 있음

○ 정부의 통합재정통계는 IMF의 1986 GFS에 따라 정부범위를 설정하고 현금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중

- 주요국들은 수정된 기준인 2001 GFS에 따라 정부범위를 재설정하고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변경하여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9 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에 따라 시범 작성중이며,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한국은행의 일반정부 통계는 UN의 1993 SNA에 따라 작성되는 국민계정통계(기업, 가계, 정부)의 일부로 작성중

- 한국은행은 2004년 종전의 1968 SNA 기준에서 1993 SNA 기준으로의 이행을 완료

□ 1986 GFS 적용에 따라 정부 포괄범위 차이, 발생주의 항목 미포함, 중앙과 지방정부 및 정부와 한은 통계간 차이 등 문제점 상존

(1) 정부 포괄범위가 국제기준과 상이하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간에도 포괄범위가 상이

① 국가채무 산정시 정부 포괄범위가 국제기준과 상이

○ (중앙정부) 1986 GFS에는 정부기능 수행기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미제시되어 국가재정법령에서 명백하게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회계와 정부관리기금만을 정부 포괄범위로 규정 ⇨ 중앙·지방 재정만 포함하고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민간기금을 제외

-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국가채무를 국가의 회계 또는 민간관리기금(24개)을 제외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규정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39개 정부관리기금 포함)

- (지방정부) 지방재정법도 채무 포괄범위를 자체적으로 규정,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과 기금을 미포함
 - 지방재정법 제1조에서 법 적용대상을 지자체의 재정 및 회계(일반회계 246개, 특별회계 2,257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기금은 제외
 - 지방정부의 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포괄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반영되는 통계에는 포함

② 정부 포괄범위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간에 상이

- (중앙정부) 회계의 정부 포괄범위는 동일하지만, 기금의 경우 재정수지는 금융성기금(12개)을, 국가채무는 민간관리기금(24개)을 제외
- (지방정부) 회계의 정부 포괄범위는 동일하지만, 기금의 경우 재정수지는 모든 기금을 포함하나 채무는 모든 기금을 제외
 - 지방재정법 제59조에서는 제1조와는 별도로 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뿐 아니라 기금도 포함토록 규정

(2) 발생주의에 따른 부채 및 수지항목 제외

- (국가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등 발생주의 항목 제외
 - 현행 법률상 채무항목 (현금주의) : 국가재정법은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은 지방채증권·차입금 만을 채무로 규정
- (재정수지) 감가상각비와 같은 고정자본소모비용 등이 제외

(3) 한국은행 재정통계와 불일치

- 한국은행은 1993 SNA 등에 따른 제도단위와 시장성 기준으로 자체적인 정부 포괄범위를 설정하고, 발생주의 기준으로 재정통계를 산출함에 따라 정부통계와 차이 발생

- ① 정부통계에 포함되는 **기업특별회계** 등을 공기업으로 보아 제외
 (중앙정부) 양곡·조달·우정사업 등 4개 기업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를 제외
 (지방정부) 247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 (전체 2,257개 특별회계)
- ② 정부통계에 포함되는 **일부 기금**을 자체적인 시장성기준에 따라 공기업으로 보아 제외 또는 포함
 (중앙정부) 주택·양곡 등 19개 금융성·기업성 기금을 제외
 (지방정부) 전체 기금(2,342개)을 포함
- ③ 정부통계에서 제외되는 **일부 비영리공공기관**을 자체적인 시장성기준에 따라 포함
 (중앙정부) 에너지관리공단, 국토연구원 등 119개 공공기관을 포함
 (지방정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15개 공공기관을 포함
- ④ 정부통계에서 제외되는 **발생주의 항목**을 자체적으로 추정하여 포함
 (채권 시가평가 등)
 (정부부채)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등이 포함
 (재정수지) 고정자본소모 비용 등이 포함

(4) 지방 재정통계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공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어 공공기관 유형, 관리방식 등이 매우 다양
 - 자치단체 : 일반회계 246개· 특별회계 2,257개, 기금 2,342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131개 (공사51, 공단80)
 - 기타 공공기관(출연·출자기관) 325개 (2009년 10월 조사기준)

<표 2> 국내 재정통계 비교

| 구분 | 정부 | | 한국은행 | |
|--------------------|-----------------------|---|---------------------------------------|--|
| | 국가채무 | 재정수지 | | |
| 적용기준 | 1986 GFS | | 1993 SNA | |
| 회계기준 | 현금주의 | | 발생주의 | |
| 정부 포괄범위 기준 | 기능 기준 (민간관리 기금 제외) | 기능 기준 (금융성 기금 제외) | 제도단위 및 시장성 기준을 적용 | |
| 포괄 범위 (2010 기준) | 특별회계 (18개) | 18개 모두 포함 | | 13개 (양곡관리·조달·우정사업 등 5개는 공기업으로 보아 제외) |
| | 기금 (63개) | 40개 정부기금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24개 민간기금 제외 | 52개 * 신보·기보 등 12개 금융성 기금 제외 | 45개 * 금융성·기업성 기금 19개 제외 - 외평·주택 등 8개 정부기금 제외 - 공무원연금·사학연금·신보 등 11개 민간기금 제외 |
| | 지방정부 | 일반회계·특별회계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
| | 공공기관 | × | | ○ (134개) |

Ⅲ. 재정통계 개편방안

1. 기본 방향

(1) 기본적인 통계 기준은 1986 GFS에서 2001 GFS로 전환

- 발생주의 기준인 UN의 1993 및 2008 SNA, EU의 1995 ESA 기준과 주요국들의 사례 등을 보조기준으로 활용
- ① 회계기준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 → 발생주의 부채(미지급금·선수금·예수금 등) 및 재정수지(감가상각비 등) 항목 포함
- ② 정부포괄범위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설정 →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으로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 및 민간관리기금 포함
 - 2008 SNA 등 국제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가보상률을 적용하여 시장성 판단 : 원칙적으로 원가보상률이 50%보다 낮으면 일반정부, 높으면 공기업으로 분류

(2)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통계 기준 일치화

- 1993 SNA 기준에 따라 기 적용 중인 한국은행의 자체적인 회계기준과 일반정부 포괄범위 기준을 정부의 개편안과 일치
 - 2001 GFS는 1993 SNA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

(3) 지방 재정통계 정비

-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

2. 일반정부 포괄범위 (중앙정부, 지방정부)

□ 적용 기준

- (1단계)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제도단위 여부 판단 :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가 아닌 경우(일반·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에는 일반정부로 분류
 - 독립적인 제도단위 : 정부 제도단위와는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의사결정과 자금운용을 하는 경우

- (2단계) 원가보상률 산정 :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인 경우(민간관리기금, 공공기관 등)에는 최근 3년 평균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로 분류
 - 산정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체수입비율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원가보상률이 SNA 등 국제기준에 보다 부합

 - 2005년 9월 OECD 조사에 따르면, 21개 회원국 중 17개 국가에서 시장성 판단기준으로 원가보상률을 활용 (이 중 14개 국가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

 - 원가보상률 = $\frac{\text{판매액}}{\text{생산원가}}$ (2007~2009년의 3개년 기준)
 - * 판매액: 일반제조 및 서비스업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영업수익, 사업수익 등이 판매액에 해당되며 정부로부터 수취한 부담금, 대가성 없는 이전수입성격 등의 금액은 판매액에서 제외. 금융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측정된 중개서비스 금액(FISIM)을 판매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보험 및 연금기금 서비스의 경우 추가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투자수익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각종 준비금의 증감액을 판매액에 포함하여야 함

* 생산원가: 중간소비,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 생산세의 합계금액으로 측정하고 대가성이 없는 이전지출 성격의 금액은 생산원가에서 제외. 일반제조 및 서비스업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사업비용, 일반운영비, 일반관리비 등이 해당됨.

○ (3단계) 특수기준 적용 : 2단계 기준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동 기준에 해당되면 일반정부로 분류 (2008 SNA 등에 소개)

- 사회보장기구(국민건강보험 등)·구조조정기구(구조조정기금, 예보채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 부과식 혹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직역연금(군인연금, 공무원연금)
- 정부가 유일한 고객이거나 R&D 수행하는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출연연구기관 등)

□ 개편안 (중앙정부)

○ (특별회계) 우정사업본부 관련 3개 특별회계를 제외한 15개 특별회계는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가 아니므로 일반정부에 포함

- 우정사업본부는 시장성이 높은 준기업 형태의 별도 제도단위로 일반정부에서 제외 ('07~'09년 평균 원가보상률 97%)
- 법률상 분리된 3개 특별회계(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경영자율성 보장(제3조) 및 별도 의사결정주체(제4-5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

○ (기금)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가 아닌 **정부관리기금은 일괄 포함**,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인 **민간관리기금은 원가보상률 기준 등에 따라 일반정부 포함여부 결정**

- 총 24개 민간관리기금 중에서 9개 기금의 원가보상률이 50%를 초과하였으나, 구조조정기구 3개(구조조정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금 2개(근로자복지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를 제외한 4개 민간관리기금만 제외

- 따라서 4개 민간관리기금(사학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60개 기금**은 일반정부에 포함

○ (비영리공공기관) 원가보상률 기준 및 특수기준을 적용한 결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82개 기관(공기업 21, 준정부기관 79, 기타공공기관 182) 중에서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33개, 기타공공기관 83개 등 총 137개를 제외한 145개 기관을 일반정부에 포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관리계정을 합산한 통합계정 기준으로 원가보상률 산정

- 기타공공기관: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가보상률이 50%를 초과하기도 하였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일괄하여 일반정부로 분류

<표 3> 일반정부 분류결과 (중앙정부, 2011년 기준)

(단위 : 개)

| 구 분 | 갯수 (A) | 제도단위 | 원가보상률 50%초과 (B) | 특수기준 적용 (C) | 분류결과 | |
|--------|-----------|-----------------------|---------------------|--|------------------|---------------|
| | | | | | 공기업 (D=B-C) | 일반정부 (A-D) |
| 일반회계 | 1 | 일반정부 | - | - | 0 | 1 |
| 특별회계 | 18 | 일반정부 (우정사업본부는 준기업) | 3 | - | 3 (우정사업본부 관련) | 15 |
| 정부관리기금 | 40 | 일반정부 | - | - | 0 | 40 |
| 민간관리기금 | 24 | 독립된 제도단위 | 9 | 구조조정기금 정부가 유일한 고객 | 4 | 20 |
| 계 | 64 | - | 9 | 5 | 4 | 60 |
| 공기업 | 21 | 독립된 제도단위 | 21 | | 21 | 0 |
| 준정부기관 | 79 | 독립된 제도단위 | 48 | 구조조정기금 정부가 유일한 고객 사회보장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 33 | 46 |
| 기타공공기관 | 182 | 독립된 제도단위 | 116 (설립초기 2개 포함) | 정부가 유일한 고객 정부출연연구기관 | 83 | 99 |
| 계 | 282 | - | 185 | 48 | 137 | 145 |

□ 개편안 (지방정부)

-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회계·기금 및 지방공기업 중 비영리공공기관은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중앙정부와 동일한 통계기준 적용
 - 일반회계 (246개) 및 특별회계 (2,257개) : (현행) 모두 포함 → (개편) 모두 포함
 - 기금 (2,342개) : (현행) 채무는 미포함, 재정수지는 포함 → (개편) 모두 포함
 - 지방 공기업 (131개) : (현행) 모두 제외 → (개편) 일부 포함
 - * 현재 원가보상률 산정 등을 위한 전문가 용역 추진 중
 - *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원가보상률 기준에 질적요소를 보완 : 원가보상률 높은 지방시설관리공단인 경우 정부가 유일한 고객이므로 일반정부로 일괄분류, 원가보상률 낮은 일부 지하철공사 및 개발공사는 동일유형 기관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공기업으로 일괄분류 등
- 기타 공공기관은 선 관리체계 마련(2011년 착수) 후 신통계 기준 적용
 - 기타 공공기관 (약 320개) : (현행) 모두 제외 → (개편) 당분간 모두 제외
 - * 다만, 대부분의 기타공공기관은 장학재단, 문화재단 등 소규모 출연기관으로 통계범위 포함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표 4〉 통계개편 전후의 일반정부 포괄범위 비교

| 구분 | 중진 통계 | | 개편안 | |
|--------------------|-----------------------|--|---|---|
| | 정부 | 한국은행 | 정부 및 한국은행 | |
| | 국가채무 | 재정수지 | | |
| 적용기준 | GFSM 1986 | | GFSM 2001, 1993 SNA 및 2008 SNA | |
| 회계기준 | 현금주의 | | 발생주의 | |
| 정부 포괄범위 기준 | 기능 기준 (민간관리 기금 제외) | 기능 기준 (금융성 기금 제외) | 제도단위 및 시장성 기준을 적용 | 제도단위 및 시장성 기준을 적용 |
| 포괄 범위 (2010 기준) | 특별회계 (18개) | 18개 모두 포함 | 13개 (양곡관리·조달·우정사업 등 5개는 공기업으로 보아 제외) | 15개 (준기업으로 판단된 우정사업본부 관련 우편사업·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3개는 공기업으로 보아 제외) |
| | 기금 (64개) | 40개 정부기금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24개 민간기금 제외 | 45개 * 금융성·기업성 기금 19개 제외 - 외평·주택 등 8개 정부기금 제외 - 공무원연금·사학연금·신보 등 11개 민간기금 제외 | 60개 * 24개 민간관리기금 중 9개가 원가보상률이 50%를 초과하였으나, 구조조정기구 3개 및 정부기금 유입한 고객인 기금 2개를 제외한 4개 민간관리기금(사학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주택금융진흥기금)만 제외 |
| 지방정부 ^{주)} | 일반회계·특별회계 | 일반회계·특별회계·특별회계, 기금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 4,845개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모두 포함 |
| 공공기관 | x | ○ (134개) | ○ (중양정부산하 282개 중 145개, 지방정부산하는 미정) | |

<표 5> 기금별 분류결과

- ① 정부관리기금 39개 (일반정부 39, 공기업 0)
- ② 민간관리기금 24개 (일반정부 20, 공기업 4)

| 연번 | 기금명 | 관리주체 (위탁관리) | 원가 보상률 | 분류결과 | 검토 의견 |
|----|---------------|----------------|-----------|------|--|
| 1 | 고용보험기금 | 노동부 | - | 일반정부 | ○ 정부관리기금은 별도의 제도단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가보상률과 관계없이 모두 일반정부로 분류 |
| 2 | 공공자금관리기금 | 재정부 (한국은행) | - | 일반정부 | |
| 3 | 공적자금상환기금 | 재정부 (한국은행) | - | 일반정부 | |
| 4 | 과학기술진흥기금 | 교과부 (과학재단) | - | 일반정부 | |
| 5 | 관광진흥개발기금 | 문광부 | - | 일반정부 | |
| 6 | 국민건강증진기금 | 복지부 | - | 일반정부 | |
| 7 | 국민연금기금 | 복지부 (연금공단) | - | 일반정부 | |
| 8 | 국민주택기금 | 국토부 (국민은 등) | - | 일반정부 | |
| 9 | 군인복지기금 | 국방부 | - | 일반정부 | |
| 10 | 군인연금기금 | 국방부 | - | 일반정부 | |
| 11 | 남북협력기금 | 통일부 (수출입은) | - | 일반정부 | |
| 12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림부 (농유통공) | - | 일반정부 | |
| 13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재정부 (한국은행) | - | 일반정부 | |
| 14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림부 | - | 일반정부 | |
| 15 | 농지관리기금 | 농림부 (농어촌공) | - | 일반정부 | |
| 16 | 대외경제협력기금 | 재정부 (수출입은) | - | 일반정부 | |
| 17 | 문화재보호기금 | 문화재청 | - | 일반정부 | |
| 18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지경부 (방폐공단) | - | 일반정부 | |
| 19 | 방송발전기금 | 방송위 (방송광고) | - | 일반정부 | |
| 20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법무부 | - | 일반정부 | |
| 21 | 보훈기금 | 보훈처 | - | 일반정부 | |
| 22 | 복권기금 | 총리실 | - | 일반정부 | |
| 23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노동부 | - | 일반정부 | |
| 24 | 석면피해구제기금 | 환경부 (환경공단) | - | 일반정부 | |
| 25 | 수산발전기금 | 국토부 (수협) | - | 일반정부 | |
| 26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보훈처 | - | 일반정부 | |
| 27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 농림부 (농협) | - | 일반정부 | |
| 28 | 양곡증권정리기금 | 농림부 | - | 일반정부 | |
| 29 | 여성발전기금 | 여성부 | - | 일반정부 | |
| 30 | 외국환평형기금 | 재정부 (한국은행) | - | 일반정부 | |
| 31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교과부 | - | 일반정부 | |
| 32 | 응급의료기금 | 복지부 | - | 일반정부 | |

| 연번 | 기금명 | 관리주체 (위탁관리) | 원가 보상률 | 분류결과 | 검토 의견 | |
|----|-------------------|----------------|-----------|------|-------------------------|----------|
| 33 | 임금채권보장기금 | 노동부 | - | 일반정부 | | |
| 34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농림부 (농유통공) | - | 일반정부 | | |
| 3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노동부 | - | 일반정부 | | |
| 36 | 전력산업기본기금 | 지경부 (한수원) | - | 일반정부 | | |
| 37 | 정보통신진흥기금 | 지경부 (정통진흥원) | - | 일반정부 | | |
| 38 | 지역신문발전기금 | 문광부 (언론재단) | - | 일반정부 | | |
| 39 | 청소년육성기금 | 문광부 | - | 일반정부 | | |
| 40 | 축산발전기금 | 농림부 (농협) | - | 일반정부 | | |
| 41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연금공단 | -597.0% | 일반정부 | | 부과식 직역연금 |
| 42 | 구조조정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 65.0% | 일반정부 | | 구조조정기구 |
| 43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 109.5% | 공기업 | | |
| 44 | 국제교류기금 | 한국국제교류재단 | 1.2% | 일반정부 | | |
| 45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근로복지공단 | 100.1% | 일반정부 | 정부가 유일한 고객 | |
| 46 | 금강수계관리기금 | 금강수계관리위 | 0.0% | 일반정부 | | |
| 47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248.6% | 일반정부 | | |
| 48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수계관리위 | 0.0% | 일반정부 | | |
| 49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협 신용보증 | -1320.8% | 일반정부 | | |
| 50 | 문화예술진흥기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9.3% | 일반정부 | | |
| 51 | 부실채권정리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 65.0% | 일반정부 | 구조조정기구 | |
| 5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사학연금공단 | 725.8% | 공기업 | 자율형 직역연금 | |
| 53 | 사학진흥기금 | 한국사학진흥재단 | 226.0% | 공기업 | | |
| 54 | 산업기본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180.7% | 일반정부 | | |
| 55 | 수출보험기금 | 한국무역보험공사 | -282.0% | 일반정부 | | |
| 56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180.7% | 일반정부 | | |
| 57 | 언론진흥기금 (구 신문발전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 80.5% | 일반정부 | 정부가 유일한 고객 | |
| 58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영산강수계관리위 | 0.0% | 일반정부 | | |
| 59 | 영화발전기금 | 영화진흥위원회 | 13.4% | 일반정부 | | |
| 60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예금보험공사 | 369.5% | 일반정부 | 구조조정기구 | |
| 61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341.6% | 공기업 | | |
| 62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89.2% | 일반정부 | | |
| 63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 정밀화학산업진흥회 | 0.0% | 일반정부 | 관리주체를 지경부로 전환하는 입법 추진 중 | |
| 64 | 한강수계관리기금 | 한강수계관리위 | 0.0% | 일반정부 | | |

<표 6> 공공기관별 분류결과

① 공기업 21개 (일반정부 0, 공기업 21)

(단위 : 백만원)

| No. | 기관명 | 국민계정체계(SNA) | | | 부문 분류 | 비고 |
|-----|--------------|-------------|------------|---------|-------|----|
| | | 판매액 | 생산원가 | 원가보상율 | | |
| A01 | 부산항만공사 | 558,739 | 326,663 | 171.00% | 공기업 | |
| A02 | 인천국제공항공사 | 3,230,599 | 1,923,802 | 167.90% | 공기업 | |
| A03 | 인천항만공사 | 213,313 | 186,067 | 114.60% | 공기업 | |
| A04 | 한국지역난방공사 | 3,124,323 | 2,873,674 | 108.70% | 공기업 | |
| A05 | 한국공항공사 | 1,179,574 | 1,084,775 | 108.70% | 공기업 | |
| A06 | 한국석유공사 | 4,002,731 | 2,519,028 | 158.90% | 공기업 | |
| A07 | 한국전력공사 | 93,524,130 | 98,007,453 | 95.40% | 공기업 | |
| A08 | 한국가스공사 | 56,818,753 | 54,748,164 | 103.80% | 공기업 | |
| A09 | 한국광물자원공사 | 88,511 | 141,356 | 62.60% | 공기업 | |
| A10 | 한국토지주택공사 | 48,467,808 | 41,998,470 | 115.40% | 공기업 | |
| A11 | 대한석탄공사 | 658,970 | 773,128 | 85.20% | 공기업 | |
| A12 | 한국철도공사 | 9,908,718 | 12,793,679 | 77.50% | 공기업 | |
| A13 | 대한주택보증(주) | 1,295,026 | 1,146,303 | 113.00% | 공기업 | |
| A14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451,641 | 265,563 | 170.10% | 공기업 | |
| A15 | 한국감정원 | 339,613 | 325,683 | 104.30% | 공기업 | |
| A16 | 한국관광공사 | 691,138 | 756,153 | 91.40% | 공기업 | |
| A17 | 한국도로공사 | 10,077,984 | 7,609,398 | 132.40% | 공기업 | |
| A18 | 한국마사회 | 5,840,042 | 5,143,334 | 113.50% | 공기업 | |
| A19 | 한국방송광고공사 | 937,381 | 911,346 | 102.90% | 공기업 | |
| A20 | 한국수자원공사 | 5,862,821 | 5,301,729 | 110.60% | 공기업 | |
| A21 | 한국조폐공사 | 1,068,406 | 1,022,300 | 104.50% | 공기업 | |

② 준정부기관 79개 (일반정부 46, 공기업 33)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단위 : 백만원)

| No. | 기관명 | 국민계정체계(SNA) | | | 부문 분류 | 비고 |
|-----|------------|--------------|---------|---------|-------|--------|
| | | 판매액 | 생산원가 | 원가보상율 | | |
| B01 | 공무원연금공단(*) | (-)4,201,358 | 757,205 | -554.9% | 일반정부 | |
| B02 | 예금보험공사(*) | 2,299,288 | 483,655 | 475.4% | 일반정부 | 구조조정기구 |

| No. | 기관명 | 국민계정체계(SNA) | | | 부문 분류 | 비고 |
|-----|-----------------------|--------------|------------|----------------|------------|------------|
| | | 판매액 | 생산원가 | 원가보상율 | | |
| B03 | 근로복지공단(*) | 926,055 | 935,623 | 99.0% | 일반정부 | 정부가 유일한 고객 |
| B04 | 기술신용보증기금(*) | (-)670,044 | 350,023 | -191.4% | 일반정부 | |
| B05 | 국민체육진흥공단(*) | 4,440,248 | 3,430,488 | 129.4% | 공기업 | |
| B06 | 국민연금공단(*) | 27,946,139 | 2,578,774 | 1083.7% | 일반정부 | 사회보장기구 |
| B07 | 한국언론진흥재단(*) | 96,788 | 159,606 | 60.6% | 일반정부 | 정부가 유일한 고객 |
| B0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86,954 | 342,731 | 25.4% | 일반정부 | |
| B09 | 한국무역보험공사(*) | (-)422,563 | 223,309 | -189.2% | 일반정부 | |
| B10 | 한국자산관리공사(*) | 258,058 | 421,418 | 61.2% | 일반정부 | 구조조정기구 |
| B11 | 한국주택금융공사(*) | 461,146 | 356,116 | 129.5% | 공기업 | |
| B1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525,944 | 96,177 | 546.8% | 공기업 | 자율형 연기금 |
| B13 | 신용보증기금(*) | (-)1,060,519 | 713,093 | -152.0% | 일반정부 | |
| B14 | 영화진흥위원회(*) | 21,322 | 91,040 | 23.4% | 일반정부 | |
| B15 | 중소기업진흥공단(*) | (-)108,069 | 267,898 | -40.3% | 일반정부 | |
| B16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2,664 | 24,301 | 11.0% | 일반정부 | |
| B1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31,814 | 453,694 | 7.0% | 일반정부 | |
| B18 | 국립공원관리공단 | 309,706 | 481,361 | 64.3% | 공기업 | |
| B19 | 국민건강보험공단 | 74,956,305 | 87,566,395 | 85.6% | 일반정부 | 사회보장기구 |
| B20 | 국제방송교류재단 | 33,134 | 135,901 | 24.4% | 일반정부 | |
| B21 | 농수산물유통공사 | 514,659 | 526,577 | 97.7% | 공기업 | |
| B2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53,722 | 713,447 | 21.5% | 일반정부 | |
| B23 | 도로교통공단 | 169,305 | 346,959 | 48.8% | 일반정부 | |
| B24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 2,576 | 0.0% | 일반정부 | |
| B25 | 한국과학창의재단 | 3,489 | 130,820 | 2.7% | 일반정부 | |
| B2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12,908 | 221,409 | 96.2% | 공기업 | |
| B27 | 한국전파진흥원 | 138,964 | 129,919 | 107.0% | 공기업 | |
| B2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43,667 | 73,280 | 59.6% | 일반정부 | 정부가 유일한 고객 |
| B29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1,726,405 | 1,750,189 | 98.6% | 공기업 | |
| B30 | 한국산업단지공단 | 172,216 | 368,009 | 46.8% | 일반정부 | |
| B31 | 한국산업인력공단 | 1,250,322 | 1,316,697 | 95.0% | 공기업 | |
| B32 | 한국석유관리원 | 73,603 | 80,152 | 91.8% | 공기업 | |
| B33 | 한국소비자원 | 4,012 | 65,480 | 6.1% | 일반정부 | |
| B34 | 한국시설안전공단 | 71,130 | 92,350 | 77.0% | 공기업 | |
| B3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260,697 | 0.0% | 일반정부 | |
| B36 | 한국전기안전공사 | 633,115 | 615,272 | 102.9% | 공기업 | |
| B37 | 한국전력거래소 | 204,938 | 201,088 | 101.9% | 공기업 | |

| No. | 기관명 | 국민계정체계(SNA) | | | 부문 분류 | 비고 |
|-----|---------------|-------------|-----------|--------|-------|------------|
| | | 판매액 | 생산원가 | 원가보상율 | | |
| B38 | 교통안전공단 | 341,671 | 430,232 | 79.4% | 공기업 | |
| B39 | 한국농어촌공사 | 7,680,472 | 8,036,593 | 95.6% | 공기업 | |
| B40 | 에너지관리공단 | 50,946 | 172,918 | 29.5% | 일반정부 | |
| B41 | 축산물품질평가원 | 23,546 | 45,486 | 51.8% | 공기업 | |
| B42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98,564 | 208,380 | 95.3% | 일반정부 | 출연연 |
| B43 | 한국광해관리공단 | 11,258 | 73,781 | 15.3% | 일반정부 | |
| B44 | 선박안전기술공단 | 30,692 | 56,704 | 54.1% | 공기업 | |
| B45 | 한국세라믹기술원 | 70,292 | 85,281 | 82.4% | 일반정부 | 출연연 |
| B46 | 한국예탁결제원 | 393,922 | 231,081 | 170.5% | 공기업 | |
| B47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25,893 | 198,442 | 63.4% | 일반정부 | 정부가 유일한 고객 |
| B48 | 한국가스안전공사 | 213,671 | 310,139 | 68.9% | 공기업 | |
| B49 | 독립기념관 | 4,866 | 50,543 | 9.6% | 일반정부 | |
| B50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96,389 | 95,342 | 101.1% | 공기업 | |
| B5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178,576 | 176,250 | 101.3% | 일반정부 | 출연연 |
| B52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91,044 | 187,062 | 48.7% | 일반정부 | |
| B53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43,455 | 44,224 | 98.3% | 공기업 | |
| B54 | 한국인터넷진흥원 | 31,961 | 265,589 | 12.0% | 일반정부 | |
| B55 | 한국청소년상담원 | 1,132 | 23,757 | 4.8% | 일반정부 | |
| B56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20,761 | 53,650 | 38.7% | 일반정부 | |
| B57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11,316 | 54,000 | 21.0% | 일반정부 | |
| B58 | 한국고용정보원 | - | 118,804 | 0.0% | 일반정부 | |
| B59 | 한국우편물류지원단 | 156,605 | 157,543 | 99.4% | 공기업 | |
| B60 |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 73,028 | 71,130 | 102.7% | 공기업 | |
| B61 | 한국우편사업지원단 | 71,280 | 69,526 | 102.5% | 공기업 | |
| B62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7,511 | 17,212 | 101.7% | 공기업 | |
| B63 | 한국연구재단 | 4,545,783 | 6,769,385 | 67.2% | 일반정부 | 출연연 |
| B64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0,636 | 20,464 | 100.8% | 공기업 | |
| B65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37,351 | 55,388 | 67.4% | 공기업 | |
| B6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718,962 | 719,332 | 99.9% | 일반정부 | 출연연 |
| B6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74,358 | 76,492 | 97.2% | 일반정부 | 출연연 |
| B68 | 한국콘텐츠진흥원 | 40,188 | 289,723 | 13.9% | 일반정부 | |
| B69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36,945 | 38,764 | 95.3% | 일반정부 | 출연연 |
| B70 | 한국환경공단 | 2,710,473 | 3,188,477 | 85.0% | 공기업 | |
| B71 |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10,709 | 22,661 | 47.3% | 일반정부 | |
| B72 | 한국장학재단 | 296 | 10,039 | 2.9% | 일반정부 | |

| No. | 기관명 | 국민계정체계(SNA) | | | 부문 분류 | 비고 |
|-----|------------|-------------|-----------|--------|-------|----|
| | | 판매액 | 생산원가 | 원가보상율 | | |
| B73 | 대한지적공사 | 1,157,908 | 1,095,631 | 105.7% | 공기업 | |
| B74 | 한국디자인진흥원 | 144,173 | 146,468 | 98.4% | 공기업 | |
| B75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9,374 | 122,312 | 24.0% | 일반정부 | |
| B76 | 한국거래소 | 1,076,204 | 659,685 | 163.1% | 공기업 | |
| B77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59,341 | 65,595 | 90.5% | 공기업 | |
| B78 | 한국철도시설공단 | 1,841,041 | 1,746,076 | 105.4% | 공기업 | |
| B79 | 한국정보화진흥원 | 36,651 | 1,246,094 | 2.9% | 일반정부 | |

③ 기타 공공기관 182개 (일반정부 99, 공기업 83)

(단위 : 백만원)

| No. | 기관명 | 국민계정체계(SNA) | | | 부문 분류 | 비고 |
|-----|-------------|-------------|------------|--------|-------|-----|
| | | 판매액 | 생산원가 | 원가보상율 | | |
| C01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22,535 | 23,426 | 96.2% | 공기업 | |
| C02 | 강원대학교병원 | 115,560 | 125,167 | 92.3% | 공기업 | |
| C03 | (주)강원랜드 | 3,422,449 | 2,067,756 | 165.5% | 공기업 | |
| C04 | 경북대학교병원 | 734,175 | 723,937 | 101.4% | 공기업 | |
| C05 | 경상대학교병원 | 432,687 | 433,720 | 99.8% | 공기업 | |
| C0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 32,153 | 0.0% | 일반정부 | |
| C07 | 광주과학기술원 | 164,365 | 310,034 | 53.0% | 일반정부 | 출연연 |
| C08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8,346 | 24,534 | 34.0% | 일반정부 | |
| C09 | 국토연구원 | 68,423 | 113,225 | 60.4% | 일반정부 | 출연연 |
| C10 | 기초기술연구회 | - | 72,834 | 0.0% | 일반정부 | |
| C11 | 한국남동발전(주) | 9,108,104 | 8,595,957 | 106.0% | 공기업 | |
| C12 | 한국남부발전(주) | 12,734,668 | 12,452,883 | 102.3% | 공기업 | |
| C1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1,893 | 67,056 | 17.7% | 일반정부 | |
| C14 | 대한결핵협회 | 25,736 | 27,694 | 92.9% | 공기업 | |
| C15 | 대한법률구조공단 | 79,819 | 138,225 | 57.7% | 공기업 | |
| C16 | 대한적십자사 | 172,664 | 1,320,707 | 13.1% | 일반정부 | |
| C17 | 대한체육회 | 18,225 | 11,010 | 165.5% | 공기업 | |
| C18 | 한국고전번역원 | 547 | 14,496 | 3.8% | 일반정부 | |
| C1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01 | 23,375 | 0.4% | 일반정부 | |
| C20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8,088 | 31,906 | 25.4% | 일반정부 | |
| C2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22,376 | 275,230 | 80.8% | 일반정부 | 출연연 |
| C22 | 국방과학연구소 | - | - | 0.0% | 일반정부 | |

| No. | 기관명 | 국민계정체계(SNA) | | | 부문 분류 | 비고 |
|-----|-------------|-------------|---------|----------|-------|-------------|
| | | 판매액 | 생산원가 | 원가보상율 | | |
| C23 | 국민생활체육회 | 5,505 | 61,032 | 9.0% | 일반정부 | |
| C24 | 중소기업유통센터 | 123,108 | 118,074 | 104.3% | 공기업 | |
| C25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 | 14,394 | 0.0% | 일반정부 | |
| C26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10,580 | 18,884 | 56.0% | 일반정부 | 정부가 유일한 고객 |
| C27 | 한국정책금융공사 | (-)489,262 | 5,359 | -9130.3% | 공기업 | 설립 초기로 실적미비 |
| C28 | 한국회귀의약품센터 | 912 | 608 | 150.0% | 공기업 | |
| C29 | (재)체육인재육성재단 | - | 23,374 | 0.0% | 일반정부 | |
| C30 | 국립중앙의료원 | 143,947 | 209,017 | 68.9% | 공기업 | |
| C31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180,115 | 175,217 | 102.8% | 공기업 | |
| C3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68,424 | 89,523 | 76.4% | 일반정부 | 출연연 |
| C33 | 한국교육개발원 | 61,945 | 101,867 | 60.8% | 일반정부 | 출연연 |
| C34 | 한국교통연구원 | 55,950 | 81,792 | 68.4% | 일반정부 | 출연연 |
| C35 | 한국국방연구원 | 19,752 | 75,467 | 26.2% | 일반정부 | |
| C36 | 한국국제교류재단 | 1,387 | 116,821 | 1.2% | 일반정부 | |
| C37 | 한국기계연구원 | 343,877 | 472,970 | 72.7% | 일반정부 | 출연연 |
| C38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64,468 | 126,536 | 50.9% | 공기업 | |
| C39 | 한국기업데이터(주) | 90,162 | 85,782 | 105.1% | 공기업 | |
| C40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56,616 | 175,443 | 32.3% | 일반정부 | |
| C41 | 한국노동연구원 | 39,234 | 79,193 | 49.5% | 일반정부 | |
| C42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4,289 | 4,566 | 93.9% | 공기업 | |
| C43 | 한국문화번역원 | 943 | 738 | 127.7% | 공기업 | |
| C4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5,209 | 45,512 | 55.4% | 일반정부 | 출연연 |
| C45 | 한국문화진흥(주) | 80,329 | 62,329 | 128.9% | 공기업 | |
| C46 | 한국법제연구원 | 5,396 | 6,825 | 79.1% | 일반정부 | 출연연 |
| C47 | 한국벤처투자 | 23,567 | 15,093 | 156.2% | 공기업 | |
| C4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6,037 | 102,232 | 54.8% | 일반정부 | 출연연 |
| C49 | 한국사학진흥재단 | 27,461 | 12,151 | 226.0% | 공기업 | |
| C50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169,130 | 319,454 | 52.9% | 일반정부 | 출연연 |
| C51 | 한국수출입은행 | 1,285,246 | 355,159 | 361.9% | 공기업 | |
| C52 | 한국식품연구원 | 53,117 | 106,249 | 50.0% | 일반정부 | |
| C53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67,972 | 358,264 | 74.8% | 일반정부 | 출연연 |
| C5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315 | 44,086 | 23.4% | 일반정부 | |
| C55 | 한국영상자료원 | 469 | 27,945 | 1.7% | 일반정부 | |
| C56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5,648 | 35,869 | 15.7% | 일반정부 | |
| C57 | 한전원자력연료(주) | 419,959 | 371,312 | 113.1% | 공기업 | |

| No. | 기관명 | 국민계정체계(SNA) | | | 부문 분류 | 비고 |
|-----|---------------|-------------|-----------|---------|-------|-----|
| | | 판매액 | 생산원가 | 원가보상율 | | |
| C58 | 88관광개발(주) | 9,536 | 9,423 | 101.2% | 공기업 | |
| C59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22,972 | 11,841 | 194.0% | 공기업 | |
| C60 | IBK캐피탈 | 134,016 | 35,832 | 374.0% | 공기업 | |
| C61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913,611 | 1,013,433 | 90.2% | 일반정부 | 출연연 |
| C62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30,419 | 60,719 | 50.1% | 일반정부 | 출연연 |
| C63 | 울산항만공사 | 109,491 | 52,978 | 206.7% | 공기업 | |
| C64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264 | 28,693 | 0.9% | 일반정부 | |
| C65 | 재단법인한국지식재산연구원 | 10,580 | 18,884 | 56.0% | 공기업 | |
| C66 | 부산대학교병원 | 759,520 | 780,076 | 97.4% | 공기업 | |
| C67 | 산업연구원 | 29,548 | 71,185 | 41.5% | 일반정부 | |
| C68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130,250 | 117,788 | 110.6% | 공기업 | |
| C69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344,827 | 344,444 | 100.1% | 공기업 | |
| C70 | (주)아이비케이시스템 | 90,604 | 80,526 | 112.5% | 공기업 | |
| C71 | 에너지경제연구원 | 42,817 | 64,676 | 66.2% | 일반정부 | 출연연 |
| C72 | 영상물등급위원회 | 2,576 | 8,304 | 31.0% | 일반정부 | |
| C73 | 예술의전당 | 65,255 | 97,658 | 66.8% | 공기업 | |
| C74 | 한국원자력의학원 | 385,432 | 336,675 | 114.5% | 일반정부 | 출연연 |
| C75 | 인천종합에너지(주) | 22,847 | 45,239 | 50.5% | 공기업 | |
| C76 | 재외동포재단 | - | 107,938 | 0.0% | 일반정부 | |
| C77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91,017 | 11,812 | -770.6% | 일반정부 | |
| C78 | 전남대학교병원 | 1,030,332 | 1,043,584 | 98.7% | 공기업 | |
| C79 | 전쟁기념사업회 | 39,268 | 49,683 | 79.0% | 공기업 | |
| C80 | (재)명동·정동극장 | 4,784 | 17,766 | 26.9% | 일반정부 | |
| C8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46,851 | 74,314 | 63.0% | 일반정부 | 출연연 |
| C82 | 주택관리공단 | 829,275 | 825,578 | 100.4% | 공기업 | |
| C83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440,750 | 412,655 | 106.8% | 공기업 | |
| C84 | 충북대학교병원 | 285,635 | 302,348 | 94.5% | 공기업 | |
| C85 | 코레일로지스(주) | 164,647 | 165,686 | 99.4% | 공기업 | |
| C86 | 통일연구원 | 2,217 | 24,034 | 9.2% | 일반정부 | |
| C87 | 한국국제협력단 | 8 | 35,977 | 0.0% | 일반정부 | |
| C88 | 한국개발연구원 | 45,091 | 183,034 | 24.6% | 일반정부 | |
| C89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13,926 | 26,942 | 51.7% | 공기업 | |
| C90 | 경북관광개발공사 | 53,062 | 47,530 | 111.6% | 공기업 | |
| C91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2,458 | 40,211 | 31.0% | 일반정부 | |
| C92 | 국립암센터 | 612,488 | 665,975 | 92.0% | 공기업 | |

| No. | 기관명 | 국민계정체계(SNA) | | | 부문 분류 | 비고 |
|------|--------------|-------------|------------|--------|-------|-----|
| | | 판매액 | 생산원가 | 원가보상율 | | |
| C93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30,245 | 163,837 | 18.5% | 일반정부 | |
| C94 | 한국동서발전(주) | 10,811,536 | 10,502,166 | 102.9% | 공기업 | |
| C95 | 서울대학교병원 | 2,602,801 | 2,616,984 | 99.5% | 공기업 | |
| C96 | 충남대학교병원 | 552,992 | 547,402 | 101.0% | 공기업 | |
| C97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84,082 | 518,952 | 54.7% | 일반정부 | 출연연 |
| C9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6,981 | 68,567 | 24.8% | 일반정부 | |
| C99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68,580 | 111,301 | 61.6% | 공기업 | |
| C100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19,743 | 20,667 | 95.5% | 공기업 | |
| C101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464,195 | 580,077 | 80.0% | 일반정부 | 출연연 |
| C102 | 한국원자력연구원 | 594,515 | 816,321 | 72.8% | 일반정부 | 출연연 |
| C103 | 한국조세연구원 | 6,793 | 44,022 | 15.4% | 일반정부 | |
| C104 | 국방기술품질원 | 17,358 | 122,848 | 14.1% | 일반정부 | |
| C105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48,618 | 47,477 | 102.4% | 공기업 | |
| C106 | 한국전력기술(주) | 1,098,449 | 960,896 | 114.3% | 공기업 | |
| C107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611,589 | 1,737,198 | 92.8% | 일반정부 | 출연연 |
| C108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163,625 | 284,559 | 57.5% | 일반정부 | 출연연 |
| C109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40,371 | 84,658 | 47.7% | 일반정부 | |
| C110 | 한국천문연구원 | 12,011 | 63,385 | 18.9% | 일반정부 | |
| C11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585 | 20,589 | 12.6% | 일반정부 | |
| C112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94,972 | 96,176 | 98.7% | 공기업 | |
| C113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143,933 | 312,812 | 46.0% | 일반정부 | |
| C114 | 한국학중앙연구원 | 3,737 | 54,082 | 6.9% | 일반정부 | |
| C115 | 한국한의학연구원 | 22,921 | 62,984 | 36.4% | 일반정부 | |
| C11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41,149 | 72,841 | 56.5% | 일반정부 | 출연연 |
| C117 | 한국해양연구원 | 363,219 | 511,063 | 71.1% | 일반정부 | 출연연 |
| C118 | 한국행정연구원 | 5,573 | 28,620 | 19.5% | 일반정부 | |
| C119 | 한국화학연구원 | 176,624 | 268,763 | 65.7% | 일반정부 | 출연연 |
| C120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2,317 | 11,416 | 20.3% | 일반정부 | |
| C121 | 한전KPS(주) | 2,250,512 | 1,978,254 | 113.8% | 공기업 | |
| C122 | 한전KDN(주) | 939,140 | 846,847 | 110.9% | 공기업 | |
| C123 | 대한장애인체육회 | 15,612 | 60,519 | 25.8% | 일반정부 | |
| C124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 70,397 | 0.0% | 일반정부 | |
| C125 | 코레일네트웍스(주) | 145,323 | 145,952 | 99.6% | 공기업 | |
| C126 | 기초전력연구원 | 50,564 | 50,635 | 99.9% | 공기업 | |
| C127 | 코스콤 | 695,800 | 580,038 | 120.0% | 공기업 | |

| No. | 기관명 | 국민계정체계(SNA) | | | 부문 분류 | 비고 |
|------|----------------|-------------|-----------|--------|-------|------------|
| | | 판매액 | 생산원가 | 원가보상율 | | |
| C128 | 한국생산성본부 | 216,143 | 221,259 | 97.7% | 공기업 | |
| C129 | 한국특허정보원 | 165,414 | 164,949 | 100.3% | 공기업 | |
| C130 | 호국장학재단 | - | 1,208 | 0.0% | 일반정부 | |
| C131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 22,890 | 28,707 | 79.7% | 공기업 | |
| C132 | 한국발명진흥회 | 71,338 | 137,472 | 51.9% | 공기업 | |
| C133 | (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1,848 | 21,661 | 8.5% | 일반정부 | |
| C134 | 한국표준협회 | 238,186 | 230,178 | 103.5% | 공기업 | |
| C135 | 동북아역사재단 | - | 57,159 | 0.0% | 일반정부 | |
| C136 | 시장경영진흥원 | 42,380 | 42,187 | 100.5% | 공기업 | |
| C137 | 녹색사업단 | 1 | 4,298 | 0.0% | 일반정부 | |
| C138 |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 125,861 | 119,301 | 105.5% | 공기업 | |
| C139 | 항로표지기술협회 | 9,798 | 9,728 | 100.7% | 공기업 | |
| C140 | 정부법무공단 | 7,143 | 10,959 | 65.2% | 일반정부 | 정부가 유일한 고객 |
| C141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697 | 2,344 | 72.4% | 공기업 | |
| C142 | 코레일테크(주) | 99,167 | 92,921 | 106.7% | 공기업 | |
| C143 | 한국저작권위원회 | 4,471 | 26,879 | 16.6% | 일반정부 | |
| C144 | 게임물등급위원회 | 2,361 | 14,529 | 16.2% | 일반정부 | |
| C145 | 인천항만보안(주) | 25,556 | 26,914 | 95.0% | 공기업 | |
| C146 | 전략물자관리원 | 597 | 7,693 | 7.8% | 일반정부 | |
| C147 | 노사공동 고용지원사업단 | - | 14,958 | 0.0% | 일반정부 | |
| C148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 5,038 | 0.0% | 일반정부 | |
| C149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2,796 | 10,912 | 25.6% | 일반정부 | |
| C150 | 태권도진흥재단 | 1,866 | 17,232 | 10.8% | 일반정부 | |
| C151 | 평생교육진흥원 | 38,244 | 42,692 | 89.6% | 공기업 | |
| C152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 | 376 | 0.0% | 일반정부 | |
| C153 | IBK신용정보 | 48,084 | 43,298 | 111.1% | 공기업 | |
| C154 | 산업기술연구회 | - | 59,560 | 0.0% | 일반정부 | |
| C155 | 전북대학교병원 | 608,266 | 594,764 | 102.3% | 공기업 | |
| C156 | 제주대학교병원 | 133,556 | 124,150 | 107.6% | 공기업 | |
| C157 | 중소기업은행 | 5,536,087 | 4,589,825 | 120.6% | 공기업 | |
| C158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49,882 | 587,576 | 8.5% | 일반정부 | |
| C159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307,142 | 357,178 | 86.0% | 일반정부 | 출연연 |
| C160 | 한국과학기술원 | 722,799 | 1,119,376 | 64.6% | 일반정부 | 출연연 |
| C161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86,778 | 280,908 | 30.9% | 일반정부 | |
| C162 | 한국산업은행 | 5,249,401 | 1,343,103 | 390.8% | 공기업 | |

| No. | 기관명 | 국민계정체계(SNA) | | | 부문 분류 | 비고 |
|------|-------------|-------------|------------|--------|-------|-------------|
| | | 판매액 | 생산원가 | 원가보상율 | | |
| C163 | 한국전기연구원 | 216,341 | 287,720 | 75.2% | 일반정부 | 출연연 |
| C164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217,518 | 286,965 | 75.8% | 일반정부 | 출연연 |
| C165 | 코레일유통(주) | 240,211 | 216,521 | 110.9% | 공기업 | |
| C166 | 한국투자공사 | 134,360 | 103,425 | 129.9% | 공기업 | |
| C167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504 | 20,888 | 12.0% | 일반정부 | |
| C168 | 한국어촌어항협회 | 43,063 | 53,455 | 80.6% | 일반정부 | 정부가 유일한 고객 |
| C169 | 부산항만보안(주) | 28,380 | 28,826 | 98.5% | 공기업 | |
| C170 | 산은금융지주 | - | 1,512 | 0.0% | 공기업 | 설립 초기로 실적미비 |
| C171 | 소상공인진흥원 | 220 | 36,667 | 0.6% | 일반정부 | |
| C172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94 | 56,582 | 0.2% | 일반정부 | |
| C173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8,655 | 47,252 | 18.3% | 일반정부 | |
| C174 | 한국서부발전(주) | 10,586,705 | 10,290,471 | 102.9% | 공기업 | |
| C175 | 노사발전재단 | 9,224 | 19,505 | 47.3% | 일반정부 | |
| C176 | 한국수력원자력(주) | 16,465,282 | 13,697,624 | 120.2% | 공기업 | |
| C177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12,892 | 59,742 | 21.6% | 일반정부 | |
| C178 | 한국중부발전(주) | 10,132,423 | 9,790,950 | 103.5% | 공기업 | |
| C179 | 코레일관광개발(주) | 111,898 | 106,911 | 104.7% | 공기업 | |
| C180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1,205,401 | 933,675 | 129.1% | 공기업 | |
| C181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20,334 | 19,839 | 102.5% | 일반정부 | 정부가 유일한 고객 |
| C182 | 재단법인 국악방송 | 2,488 | 15,455 | 16.1% | 일반정부 | |

3. 공적연금 총당부채의 처리

□ 국제기준 (2001 GFS, 2008 SNA 등)

- 국제기준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의 총당부채는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부기하도록 명시**
 - 정책환경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어 급여수준 등이 불확실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급여가 지출될 때 비용으로 기록
 - * 사회보장급여는 불확실하고 정부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인식되지 않지만, 급여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으므로 미래급여의 현재가치를 부기 (2001 GFS 4.34 및 7.145)
 - * 2008 SNA도 사회보장급여채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17.124)

- 또한,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직역연금의 총당부채는 일반정부부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 (2001 GFS Annex to Chapter 2의 21 및 4.35)
 - 다만, IMF GFS Yearbook 등 문헌조사에 의하면 영·미·일 등 주요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업연금 총당부채를 일반정부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총당부채 규모
 - ① 확정기여형: 피용자에게 지급될 연금급여는 기금자산의 규모에 따라 결정 → 기금자산의 경상시장가격이 부채
 - ② 확정급여형: 피용자에게 지급될 연금급여는 근무기간과 봉급수준에 따라 결정 → 약속된 급여의 현재가치가 부채. 대차대조표의 보험책임준비금(insurance technical reserves) 항목에 계상

<표 7> 2001 GFS의 직역연금 총당부채 처리기준

| 연기금 유형 | | 포함 부문·단위 | 우리나라의 예 | 총당부채의 계상 |
|------------|------|----------|-------------|--|
| 적립식 | 자율형 | 금융공기업 | 사학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기여방식: 기금자산의 경상시장가격 |
| | 비자율형 | 일반정부 | - | |
| 비적립식 (부과식) | | 일반정부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방식: 지급할 퇴직급여의 현재가치 |

□ 개편안

- (국민연금) 사회보장기금에 해당하므로 총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미포함하고 부기
 -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2001년 9월)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계약적 교환거래(contractual exchange transactions)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 모든 회원국이 동의
 - IMF GFS Yearbook 등을 보더라도 국민연금 총당부채를 포함하는 나라는 없음
- (직역연금)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2개 직역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의 총당부채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부결산보고서 등을 통해 별도로 정보 공개
 - IMF 『GFS Yearbook 2008』에 의하면 OECD 33개 회원국 중에서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3개국만이 보험책임준비금에 연금 총당부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보험책임준비금은 연기금 및 생명보험에 대한 가계의 순지분, 비 생명보험의 선납보험료, 기존 청구권에 대한 준비금으로 구성 (2001 GFS 7.120)

- 영국, 미국 등 11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까지의 답변에 의하면 연금 총당부채를 국가채무 통계에 포함하는 나라는 호주가 유일
- 문헌조사에 의하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연금 총당부채를 재무제표 상에는 반영하지만, 국가채무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4. 내부거래의 제외 문제

□ 국제기준 (2001 GFS 등)

○ 국제기준은 내부거래를 정부 재정통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

- (2001 GFS 3.91-92) 정부부문 구성단위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사회보장기금이 정부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내부거래로 인식하도록 규정
 - (2001 GFS Companion Material) 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이 정부단위로부터 취득한 채권이라도 내부거래로 인식하도록 규정
 - OECD Economic Outlook의 일반정부부채 통계도 내부거래를 제외
 - EU, 미국 등 주요국도 동 기준에 따라 내부거래를 제외
- ※ 우리나라의 경우 1986 GFS와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보유국채 등 정부 회계·기금간 직접 거래가 아닌 시장을 통한 간접적인 거래는 제외하고 있지 않음
- (국가재정법 제91조 제3항 제2-3호) 국가의 회계·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한 국채 또는 국가의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국가채무에서 제외
- ※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 제정 이후 재정부령으로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2009년 3월)하면서 내부거래 제외원칙을 명시
- (제6조 제1항 제4호) 재무제표 통합 작성시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

□ 개편안

- 그 동안 제외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유국채 등도 내부거래로 보아 제외하되, 제외시킨 금액은 부기하여 공개
 - 주요 선진국도 연금 보유국채는 내부거래로 보아 제외
 -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기준에 따라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금 등의 국채 보유분을 병기하여 포함된 국채규모를 국내 발표
 - 다만, 기존 통계에 포함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정정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연금 보유국채 등은 부기하여 규모를 공개

< 참고 >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었던 부채항목의 일반정부부채 포함여부

- 공기업 부채 : 공기업은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공기관 부채 :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부채만 포함
- 통안증권 등 한국은행 부채 : 한국은행은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음
- BTO 및 BTL 관련 부채 : BTL 정부지급금은 포함시키되, BTO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우발성 채무로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연금충당부채 :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은 국제기준에서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음
- 보증채무 : 발생주의를 적용하더라도 국제기준에서 우발채무는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음

IV. 향후 추진일정

- (2011년) 재정통계 개편안 확정 및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새로운 기준에 의한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 공청회 개최결과를 반영하여 2월 중 정부안을 확정
 - 법령개정, 관련 시스템 정비 및 담당자 교육 등 실시
 - (상반기)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개정, 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D-Brain 시스템 보완 등
 - *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 및 사용자 교육 실시 전에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할 필요
 - (하반기) D-Brain 시스템 검증, 개편안 순회설명회 개최 등
- (2012년 5월) 새로운 기준에 의한 2011 회계연도 결산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국회 등에 제출